

EU, RoHS 이어 REACH 임박

EU는 내년 상반기 중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를 도입할 예정 이어서 EU 수출의 새로운 비판세 장벽으로 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ACH는 유럽지역으로 유입되는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및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미 시행 중인 WEEE나 RoHS보다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환경규제 제도로 알려져 있다.

단일 화학물질은 물론이고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ECA)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등록 시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자료 등 국제기준에 적합한 다양한 시험·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중소 영세기업의 경우 행정적·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EU 수출 비율은 현재 전체의 약 15%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주력 수출제품은 대부분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대부분 이 제도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수출 차질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EU REACH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3년 REACH 대응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며, 기업인식 제고를 위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 및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를 위한 국제수준의 인프라 확충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리고 REACH 시행이 내년 상반기로 가까워짐에 따라 올해는 REACH에 대한 기업인식 제고 및 홍보활동, DB구축, 전문가 육성 등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계획·추진 중이다.

한편 REACH는 지난 2003년 10월에 초안을 발표한 후 올해 안에 EU 국가의 최종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의미 있는 법규 채택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지난달 8월 31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AB 32,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은 캘리포니아의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배출허용량을 규정하고, 배출업자의 배출보고 의무화(mandatory greenhouse gas emissions reporting)와 배출권 거래제도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국(Air Resources Board)에 대해 2008년 1월까지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배출허용량을 설정을 비롯해, 발전소, 운송업 등 온실가스 배출업자의 온실가스 배출 연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규제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 실시를 허가하고 있어, 조만간 캘리포니아 지역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제 주지사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미 슈왈츠제네거 주지사가 법안 승인 의지를 밝힌 바 있어, 미국 내에서 최초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의미있는 온실가스 규제법이 제정·시행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지난 2005년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미국 내에서는 선도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Environment California, Environmental Defense 등과 같은 환경단체들은 특히, 이번 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이 미국 내 다른 주정부의 유사 법률 제정을 유도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동참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최소 8개의 주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유사한 배출규제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대응 노력이 연방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것이 교토 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채 여전히 국제사회 공동노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부시 행정부를 얼마만큼 압박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최대규모 해양환경조사 실시

중국이 해양공간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최대규모의 해양환경조사에 착수했다.

국가해양국(National Bureau of Oceanography)이 지원하는 본 프로그램은 2년에 걸쳐 중국 해안 102만 제곱킬로미터를 조사하게 된다.

과학자들은 사계절에 걸쳐 수심, 파고, 수면 높이, 해류, 수온, 색, 광물질, 플랑크톤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연구결과는 해양경제발전, 해양자원개발, 해양 자연해 완화·방지 및 해양환경보호에 가이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지난 2003년에 시작된 중국 연안에 관한 포괄적 조사 및 평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개국한 1949년 이후로 현재까지 세 차례의 해양조사가 실시됐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인 하계 프로그램은 1.5개 월이 걸려 총 3,000명의 조사인력이 참여했다. 해양국 부의장인 레이 보(Lei Bo)에 의하면 이들은 북동부 해안에서 남부 해안까지 동시에 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대륙의 동부 지역은 북쪽부터 남쪽까지 베이만(Bohai Sea), 황해(Yellow Sea), 동중국해(East China Sea), 남중국해(South China Sea)가 이어져 태평양과 만난다. 한편 남중국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심이 얕은 대륙붕이다.

영국 최대 인공습지, 에섹스(Essex)에 건설

영국 에섹스(Essex)의 윌러시 아일랜드(Wallasea Island)에 있는 해안절벽이 영국 최대의 인공습지 조성을 위해 파괴됐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의 윌러시 습지조성 프로젝트(Wallasea Wetlands Creation Project)는 1990년대 개발과정에서 손실된 조류서식지를 대체하기 위한 155 헥타르의 습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습지는 또한 홍수 방어작용을 하고 물고기에 양분을 제공하는 동시에 레크레이션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의 바리 가드너(Barry Gardiner) 농촌공무, 조경 및 생물다양성(Rural Affairs, Landscape and Biodiversity) 장관은 750만 파운드가 드는 월러시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습지조성 프로젝트로 꼽힌다고 말했다.

“월러시에서 우리는 야생동물, 홍수관리, 조경, 레크레이션에 대한 욕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염습지(saltmarsh)는 우림보다 더 적으며 사람들, 홍수 및 태풍방지, 야생동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매년 겨울, 수십 만에 달하는 습지 조류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에스كس 염습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월러시 습지는 검은 머리물떼새(Oystercatchers), 되부리장다리물떼새(Avocets), 쇠제비갈매기(Little Terns)와 같은 조류들이 알을 까고 먹이를 찾기 훌륭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곳이 지난 50년 동안 점점 사라졌습니다.”

염습지와 뺀 등의 습지는 주요 조류종의 생활 장소인 동시에 희귀한 식물, 곤충, 어류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또한 농어, 송어, 넙치, 청어와 같은 야생수생동물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파도에너지로 흡수하는 벼파 존인 동시에 해안이 태풍 피해 및 홍수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

호주·뉴질랜드, 도시 환경영향 저감노력

호주, 뉴질랜드 환경장관들과 호주지방정부연합(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이 대기질, 폐기물관리, 물재활용 이슈를 내년의 주요과제로 선정했다.

호주의 환경보전·유적위원회(Environment Protection and Heritage Council)도 성명을 발표하고 근래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환경이슈에 대해 1994년에 채택된 호주 국가환경보호위원회법(N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Council Act 1994)의 적절성을 평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양국의 장관들은 호주 연방정부가 제안한 풍차관련 연방법을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호주의 주정부 및 지역정부의 장관들은 호주 연방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시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호·생물다양성 보존법(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을 개정하거나 원자력발전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주 및 지역정부의 개별법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한 온실가스배출을 대중에 공개하고 의무적으로 리포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국가오염물질인벤토리(National Pollutant Inventory)와 국가환경보호장치(N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Measure)를 채택하기 이전에 일반대중의 의견을 모집해야 하며 여기에는 온실가스배출 리포팅에 관한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또한 환경장관들은 디젤자동차기관에 초점을

둔 화학물질 및 대기질이슈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며 보다 지속가능하고 호흡하기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대기오염 관련 리스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마지막으로 장관들은 이러한 의제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장관급 위원회(Ministerial Councils)에 참가하는 장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U의 포괄적 환경규제에 대비해야

EU(유럽연합)는 내년 상반기중 역내에서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를 도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품의 EU 수출시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REACH는 유럽지역으로 유입되는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및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미 시행중인 WEEE(폐 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 Directive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나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지침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보다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환경규제 제도이다.

단일 화학물질은 물론이며,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ECA,

European Chemical Agency)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등록시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자료 등 국제기준에 적합한 다양한 시험·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바,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행정적,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등록대상은 EU내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1천톤 이상은 시행 후 3년 이내, 100톤 이상이다.

1천톤 미만은 시행 후 6년 이내, 1톤 이상, 100톤 미만은 시행후 11년 이내 등록해야 한다.

등록 서류는 기술서류(TD, 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정성 보고서(CSR, Chemical Safety Report), 물질안전보건자료(SDS, Safety Data Sheet) 등이다. EU역내에 위치하는 제조·수입·대리인에 한해 유럽화학물질청(ECA)에 등록 가능하다.

우리의 대EU 수출제품은 대부분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거의 전 품목이 제도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이같은 제도 도입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은 연간 전체 수출의 약 15%인 487억불을 차지하며 매년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수출 차질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산자부 박청원 바이오나노팀장은 “EU REACH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한다는 계획”이라며 “금년에는 EU의 REACH 제도 도입이 내년 상반기경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의 대EU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